

의안번호	2215044
의 퇴 인	이정문의원
회 답 일	2026.1.7.
추계번호	25D679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분쟁사건 전담인력 증원, 서면실태조사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억 700만원, 2031년 9억 2,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7억 6,700만원 (연평균 7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교육	16	16	16	16	16	80	—
상임위원장 인건비	158	163	168	174	179	842	—
회의참석수당	24	24	24	24	24	120	—
분쟁사건 전담인력 인건비	359	446	460	555	655	2,475	
서면실태조사	50	50	50	50	50	250	—
합계	607	699	718	819	924	3,767	75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항)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재량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교육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8조(분쟁조정협회의 설치 및 구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둠(제1항)	의무규정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이 경우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되 같은 수로 하고,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20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함)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함)로 구분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22조(조정신청)	분쟁당사자는 제6조·제7조·제8조·제10조·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안 제23조(조정)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안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 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조정 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5항)	의무규정
5	안 제2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 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38조(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 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7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교육 등)	○	
2	안 제18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3	안 제20조(협의회의 회의)	○	
4	안 제23조(조정) 등	○	
5	안 제2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	현시점에서 법 위반행위 신고건수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6	안 제38조(서면실태조사)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교육·연수(안 제17조제1항제1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인건비(안 제18조제2항, 상임위원장), 회의참석수당(안 제20조, 비상임위원), 분쟁사건 전담인력의 인건비(안 제23조 등), 서면실태조사(안 제38조)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교육·연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운영 중인 가맹·대리점종합지원 교육 예산(2026년 기준, 교육 동영상 제작 등: 16,000천원)¹⁾을 참고하여 추정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현황 및 최근 5년 회의 개최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의 내역사업인 가맹·대리점종합지원에 16,000천원이 편성됨

[표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현황: 2025.12.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회의	소회의	
	위원정수	명칭	위원정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9	—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9	소회의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9	소회의	3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9	소회의	3
약관분쟁조정협의회	9	분과회의	3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9	소회의	3
합계	54	—	15
평균	9	—	3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표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분쟁조정협의회 회의실적: 2020~2024년
(단위: 회)

구분	전체회의					소회의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4	16	14	12	20	—	—	—	—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11	11	12	11	9	2	5	5	5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3	11	17	12	12	—	4	3	7	10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	2	2	1	2	—	3	5	7	6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	11	7	2	6	—	3	6	7	5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7	8	5	1	1	—	3	7	6	10
합계	56	59	57	39	50	2	18	26	32	35
평균	9.3	9.8	9.5	6.5	8.3	0.3	3	4.3	5.3	5.8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본 추계에서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상임위원장의 인건비는 유사사례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2026년 예산 기준 상임위원장의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²⁾을 적용하여 추정함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인건비(상임위원장, 법정부담금 포함): 152,538천원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2025.9.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3%	3.3%	3.3%	3.3%	3.3%

- 본 추계에서 협의회 비상임위원(전체회의 8명, 소회의 2명)의 회의참석수당의 추계에 필요한 회의개최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그 평균을 적용함
 - 전체회의: 9회(분쟁조정협의회 평균 8.68회)
 - 소회의: 4회(분쟁조정협의회 평균 3.74회)
 - 회의참석수당: 300천원
- 본 추계에서 분쟁사건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전담인력 증원 수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2026년 예산 기준 전담인력(5급)의 인건비 단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 분쟁사건 전담인력 인건비(5급, 법정부담금 포함) 단가: 69,600천원
- 본 추계에서 분쟁사건 전담인력의 증원 규모는 온라인 플랫폼 분쟁사건 접수건수 추정을 1인당 분쟁사건 처리건수(100건)로 나누어 추정함
 - 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사건 접수건수(440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체 분쟁사건 처리건수 증가율(10.69%)³⁾을 곱하여, 추계기간 동안 분쟁사건 처리건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온라인 플랫폼 분쟁사건 처리건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건)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증감률
분쟁사건 처리건수(추정)	539	597	661	731	809	10.69%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사건 전담인력 1인당 처리건수는 다음과 같으나, 본 추계에서는 분쟁사건 전담인력 1인당 연 100건을 처리한다고 가정함

[표 5] 분쟁사건 전담인력 1인당 처리건수: 2021~2025년

(단위: 건,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분쟁사건 처리건수(A)	2,936	2,868	3,151	3,840	3,660	3,291
조정 인력(B)	44	44	44	45	48	45
1인당 처리건수(C=A/B)	67	65	72	85	76	73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사건 처리건수 증가율: 2021~2025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율
분쟁사건 처리건수(전체)	2,936건	2,868건	3,151건	3,840건	4,407건	10.69%

- 분쟁사건 접수건수 추정을 전담인력 1인당 분쟁조정 건수(평균 100건)로 나누어 분쟁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증원 규모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6] 분쟁사건 전담인력 증원 규모: 2027~2031년

(단위: 건,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분쟁사건 처리건수(추정, A)	539	597	661	731	809
1인당 처리건수(B)	100	100	100	100	100
전담인력 증원((C=A/B)	5	6	6	7	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 서면실태조사 비용은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 중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50,000천원)와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50,000천원) 단가를 참고하여 추정함
-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심사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교육·연수(안 제17조제1항제1호)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교육·연수 비용은 가맹·대리점 사업자 대상 교육 동영상 제작 등의 비용(2026년 기준, 교육 동영상 제작 등: 16,000천원)을 참고하여 추정하고, 추계기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교육·연수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교육	16	16	16	16	16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상임위원장 인건비(안 제18조제2항)

- 상임위원장 인건비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2026년 예산 기준 상임위원장의 인건비(152,538천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협의회의 상임위원장 인건비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8] 상임위원장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상임위원장	인건비	158	163	168	174	179	842

주: 인건비에는 수당, 법정부담금, 퇴직연금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회의참석수당(안 제20조)

- 회의참석수당은 비상임위원 인원수(전체회의 8명, 소회의 2명)에 연도별 회의 개최횟수와 회의참석수당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9]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전체회의	지급인원(A)	8	8	8	8	8	—
	지급단가(B)	0.3	0.3	0.3	0.3	0.3	—
	회의횟수(C)	9	9	9	9	9	—
	소계(D=A×B×C)	22	22	22	22	22	108
소회의	지급인원(E)	2	2	2	2	2	—
	지급단가(F)	0.3	0.3	0.3	0.3	0.3	—
	회의횟수(G)	4	4	4	4	4	—
	소계(H=E×F×G)	2	2	2	2	2	12
합계		24	24	24	24	24	12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분쟁사건 전담인력의 인건비(안 제23조 등)

- 분쟁사건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증원 인원수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건 처리 전담인력 인건비 단가(5급 기준, 2026년 69,600천원)를 곱한 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분쟁사건 전담인력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0] 분쟁사건 전담인력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건비 (분쟁사건 전담인력)	인원	5	6	6	7	8	—
	인건비 단가	72	74	77	79	82	—
	합계	359	446	460	555	655	2,475

주: 인건비에는 수당, 법정부담금, 퇴직연금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서면실태조사(안 제38조)

- 서면실태조사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50,000천원)와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50,000천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11] 서면실태조사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서면실태조사	50	50	50	50	50	2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분쟁사건 전담인력 증원, 서면실태조사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억 700만원, 2031년 9억 2,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7억 6,700만원 (연평균 7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교육	16	16	16	16	16	80	—
상임위원장 인건비	158	163	168	174	179	842	—
회의참석수당	24	24	24	24	24	120	—
분쟁사건 전담인력 인건비	359	446	460	555	655	2,475	
서면실태조사	50	50	50	50	50	250	—
합계	607	699	718	819	924	3,767	75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6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

[참고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2021~2025년

(단위 : 건, 일, %)

구분		접수현황	처리현황 및 유형				처리기간	성립률 [A/(A+B)]
		건수	계[A+B+C]	성립[A]	불성립[B]	종결[C]		
2021	소계	2,894	2,936	1,156	392	1,388	49	75
	공정	1,054	1,054	337	129	588	51	72
	가맹	490	483	165	62	256	43	73
	하도급	855	863	386	128	349	47	75
	유통	31	25	9	3	13	54	75
	약관	393	427	225	60	142	50	79
	대리점	71	84	34	10	40	78	77
2022	소계	2,846	2,868	1,202	339	1,327	42	78
	공정	1,085	1,119	423	148	548	45	74
	가맹	489	513	230	54	229	41	81
	하도급	901	853	361	95	397	43	79
	유통	28	34	21	1	12	46	95
	약관	257	271	141	27	103	31	84
	대리점	86	78	26	14	38	48	65
2023	소계	3,481	3,151	1,278	350	1,523	47	79
	공정	1,372	1,267	475	135	657	44	78
	가맹	605	575	263	62	250	44	81
	하도급	1,044	929	354	100	475	48	78
	유통	29	26	13	1	12	39	93
	약관	339	278	137	48	93	53	74
	대리점	92	76	36	4	36	78	90
2024	소계	4,041	3,840	1,450	465	1,925	49	76
	공정	1,795	1,603	624	150	829	45	81
	가맹	584	587	246	96	245	45	72
	하도급	1,105	1,107	375	113	619	54	77
	유통	29	29	16	3	10	52	84
	약관	457	429	152	96	181	51	61
	대리점	71	85	37	7	41	76	84
2025	소계	4,726	4,407	1,709	553	2,145	57	76
	공정	2,424	2,174	792	258	1,124	56	75
	가맹	691	595	247	81	267	54	75
	하도급	1,040	1,074	413	137	524	60	75
	유통	29	29	16	—	13	79	100
	약관	451	442	216	57	169	51	79
	대리점	91	93	25	20	48	79	56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